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7.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요양보호 대상자 및

## 가족 지원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270호로 2023년 11월 10일 남완현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장기요양보호, 치매 등 노인성질병 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일상 생활 지원 등을 통해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부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함.

###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3조 ~ 제4조)

다. 지원사업 및 지원센터의 설치 등(안 제5조 ~ 제6조)

라.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안 제7조 ~ 제8조)

마. 상호 보완의 관계(안 제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11. 10. ~ 11. 14.)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조례안은

- 장기요양보호, 치매 등 노인성질병 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해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부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 지원 조례」 이고 10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돌봄 및 휴식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해당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센터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사업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와 중복 또는 충돌되지 않고 상호 보완하도록 명시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 검토 결과

-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6%를 넘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견되며, 1)노인의 비율이 높은 요양보호 대상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현황

※통계청자료(2022) (단위: 명)

| 지 역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전 국  | 831,512 | 929,003 | 1,007,423 | 1,097,462 |
| 서 울  | 115,793 | 127,060 | 135,976   | 147,401   |
| 영등포구 | 4,224   | 4,692   | 5,084     | 5,517     |

- 이에 꾸준히 증가하는 요양보호 대상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등의 업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요양보호 대상자와 그의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 걱정 및 요양보호 대상자 돌봄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의 비율은 전체 등급 판정자의 96% [65세 이상:1,051,781명, 65세 미만:45,681명 (\*2022년 통계청 자료)]

# 참고 자료

## 1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 차(생략)

## 2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 5 (생략)

**제15조(등급판정 등) ①(생략)**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③ ~ ⑤ (생략)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2. 20.>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
| 한국표준<br>질병·사인<br>분류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                      | 나. 혈관성 치매                      | F01  |
|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 마. 알츠하이머병                      | G30  |
|                      | 바. 지주막하출혈                      | I60  |
|                      | 사. 뇌내출혈                        | I61  |
|                      |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                      | 자. 뇌경색증                        | I63  |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                      |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 파.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 너. 파킨슨병                        | G20  |
|                      | 더.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   |       |
|---|-------|
| 며.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버. 중풍후유증                                    | U23.4 |
| 서. 진전(震顛)                                   | R25.1 |
|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G12   |
|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 G13*  |
| 처. 다발경화증                                    | G35   |

## 5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 3 ~ 5(생략)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 6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